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
보도참고자료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에너지절약정책과 권오정 과장, 이명진 사무관(02-2110-5423)
최광준 사무관(02-2110-4875)

# 에너지절약시설 투자, 자금조달 걱정 마세요 !

## - 올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자금 6,018억원으로 확대 -

◇ ESCO 투자사업 융자자금 3,900억원으로 3배 확대

◇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업체 대상 1,096억원 융자자금 신설

◇ 중소기업에 전체 자금의 70%(4,278억원) 우선 지원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최중경)는 올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**전년 대비 900억원 증액**(전년비 17.6%)된 **6,018억원을 지원**할 계획임을 밝히고

○ 세부내용을 담은 「**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**(이하 자금지원지침)」을 **공고**하였음

□ 특히, 올해는 **ESCO 투자사업***에 대한 융자자금 **규모를 대폭 확대**하고 **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**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**융자제도를 신설**하였음

* ESCO투자사업 : ESCO(Energy Service COmpany, 에너지절약전문기업)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비용 절감분으로 ESCO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

○ 먼저, **ESCO 투자사업**에 대한 **융자자금 규모**를 작년 1,350억원에서 올해 **3,900억원**으로 대폭 확대(작년 대비 188% 증액)하고

- 이 중 **3,000억원**(77%)을 중소기업의 ESCO 투자사업에 배정하여 **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**하였음

- 또한, **융자지원 대상**을 에너지절감 효과가 5%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

- **지원한도**도 사업당 150억원에서 **250억원으로 확대**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음

○ **직접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**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**총 2,118억원**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**1,278억원**(60%)은 **중소기업에 지원**할 예정임

- 우선 **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 관리업체**('10년 468개 지정)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**융자제도를 신설**하여 **1,096억원**을 지원하되

- '12년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**지정이 예상되는** 업체*인 경우에는 **중소기업에 한하여 동 자금을**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업체 지정에 앞서 **선제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**를 유도할 계획임

* 2012.1.1부터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강화(3년 평균)
[업 체 기준] 온실가스($tCO_2$) : 125,000 → 87,500, 에너지(TJ) : 500 → 350
[사업장 기준] 온실가스($tCO_2$) : 25,000 → 20,000, 에너지(TJ) : 100 → 90

- 아울러 ⅰ)목표관리 이외 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, ⅱ)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(중소기업에 한함), ⅲ)에너지수요관리 투자 사업(중소기업에 한함)에도 총 **1,022억원**을 융자 지원할 예정임

□ 아울러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, 중점 지원하기 위해 **자금지원 절차를 개선**하고 **평가 제도도 내실화하여 운영**할 계획임

○ 그간 **자금 지원대상 여부만을 심사**하여 투자자금의 **일부를 지원**하던 방식에서 벗어나

○ 올해부터는 ESCO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**매월,** 그 외 사업은 **2회*에 걸쳐 신청**을 받아

* 1차 신청기간 : 3.7~3.11, 2차 신청기간 : 4.18~4.22

- 에너지절약효과 등을 평가하여 **우수 사업을 선별, 투자 자금의 100%까지 지원**하는 방식으로 개편함

○ 또한,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술진보,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올해 **지원대상 설비를 조정**하였으며

- 지원대상설비의 주기적인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지원대상 설비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**지원 만료기간을 정하는 일몰제*를 도입**하고

* 지원대상 설비 신규 지정시 지원 만료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지원기간 만료시 자동 제외

-「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」를 구성하여 **지원 대상 설비를 매년 검토하여 조정**해 나갈 계획임

□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

○ "최근 고유가 등을 계기로 **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**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**업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**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

○ “앞으로도 규제로 인식되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진흥**으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.”고 강조하였음

□ 참고로 금번에 공고된 「**자금지원지침**」과 「**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**」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○ 또한, 이번 자금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**3개 권역별 설명회**를 개최할 예정임

* ESCO투자사업 관련 자금지원지침 권역별 설명회 계획(안)
영남권 : 2.25(금) 14:00, 대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·경북지원센터 회의실
호남권 : 2.28(월) 14:00, 전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세미나실
중부권 : 3. 2(수) 14:00, 용인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별관 1층 대강의실

【참고 1】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개요
【참고 2】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주요 내용

## 참고 1 '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개요

| 사업명 | | 지원규모 | 지원한도<br>(동일사업자당) | 대출기간 | 이자율*<br>('11.2월 현재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ESCO 투자사업 | | 3,900억원 | 500억원 이내<br>(사업당 250억원) | 3년 거치<br>7년 분할상환 | 고정금리 :<br>2.75%<br><br>변동금리 :<br>1.75% |
| 에너지<br>절약시설<br>설치사업 | 온실가스·에너지<br>목표관리업체<br>투자사업 | 1,096억원 | 50억원 이내 | 3년 거치<br>5년 분할상환 | 변동 금리 :<br>2.00%<br>(중소기업의<br>경우 1.75%) |
| | 산업체 등<br>에너지절약형시설<br>설치 사업 | 1,022억원 | 50억원 이내 | | |
| | 고효율제품 등<br>생산시설설치사업 | | 10억원 이내 | | |
| | 에너지수요관리<br>투자사업 | | 5억원 이내 | | |
| 총계 | | 6,018억원 | | | |

*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에 따름

## 참고 2 '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주요 내용

## 1. 개정배경

○ 에너지절약 산업화를 위한 ESCO산업 육성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자금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지침 개정

◇ ESCO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모, 대상범위 등 확대
◇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지원
◇ 자금지원절차 개선 등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

## 2. 주요 개정내용

### 1 ESCO 지원예산, 대상범위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

① ESCO 지원예산 확대 : ('10)1,350억원 → ('11)3,900억원

○ 정책자금중 3,000억원(77%)은 중소기업 및 건물ESCO 지원 대상, 900억원(23%)은 대기업·공공기관 대상 자금으로 운용

② ESCO사업 대상범위 확대

○ ESCO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설비개체가 아닌 설비 신·증설의 경우에도 에너지절약효과가 5%이상인 경우 자금 지원

○ ESCO사업 지원대상을 ESCO 또는 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진단결과를 반영한 시설투자로 범위 확대

*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방기, 난방기 또는 냉·난방기는 제외(다만,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는 지원 가능)
*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기 절감효과를 입증하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전기절전기 제외
*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효과가 10% 이상이라고 인증받지 못한 설비 제외

③ ESCO사업 지원조건 개선

○ ('10년)단일사업당 150억원(동일사업자당 500억) →
('11년)단일사업당 250억원(동일사업자당 500억)으로 지원한도 확대

○ ESCO 사업자가 아닌 수혜자(에너지사용자) 기준으로 대·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자금지원 규모 구분

○ 에너지 사용자 및 ESCO기업의 대·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요금액의 100%이내 지원 (현행 : 대기업 80%이내 지원)

○ 건물 에너지절약 지원 강화를 위해 건물부분 ESCO 투자사업은 중소기업 전용자금 지원 허용

○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경우 자금지원시 우대(가점 부여)

- 중소 ESCO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ESCO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전용자금 지원 허용

* '성과배분계약' 방식은 '12년까지만 지원하고 '13년부터는 자금지원 제외

○ 「전문 ESCO*」로 지정된 업체는 자금지원시 우대(가점 부여)

* 전문ESCO : 특정기술분야의 사업수행 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ESCO를 대상으로, 전문성, 경영상태, 에너지사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

## 2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지원 (신설)

①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업체 지원예산 : 1,096억원

* 당해 연도 같은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내

②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선(先)투자시 지원

○ '12년까지 목표관리대상 예정 중소기업의 선(先)투자도 지정업체에 준하여 지원

## □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 확대

① 절약시설설치사업(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지원 포함) 지원예산의 60%를 중소기업 우선 배정

* 상반기 융자지원 예산 미소진시, 7월 이후 대·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 (ESCO사업 포함)

② 중소기업의 절약시설 투자시 자금지원 우대(가점 부여)

③ 수요관리투자사업,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

④ 에너지절감 효과 제고를 위해 개체설비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고, 신·증설 설비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

## □ 지원대상사업 축소 및 사업별 지원한도 조정

① 신규 정책수요 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사업 폐지

○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자발적협약기업(VA)투자사업 지원 폐지

○ 중복지원 논란이 있는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, 지원 수요가 감소한 집단에너지절약시설사업 지원 중단

○ 기존 사업의 사업별 지원한도 축소 조정

* 산업체 등 절약시설 : ('10) 200억원 → ('11) 50억원
*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: ('10) 30억원 → ('11) 10억원
* 수요관리투자사업 : ('10) 50억원 → ('11) 5억원

○ 시설자금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운전자금은 폐지

* 운전자금은 중기청 등 타 기관의 정책자금 활용 유도

## □ 자금 지원절차 개선 등 운용 효율성 제고

① 지원방식을 '평가후 지원'으로 전환

○ 사업 타당성, 에너지 절감효과, 대·중소 상생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 선별 지원

- 평가결과 총점 70점이상은 지원(예산범위내), 70점미만은 제외

* 제외사업 중 평가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보완시 재신청 허용

○ 자금지원 규모에 따라 온라인, 오프라인 평가방식 도입

- 온라인 평가 : 50억미만 사업 심사위원이 온라인상에서 평가

- 오프라인 평가 : 50억이상 사업 자금추천위 개최, 심사

* 1억원 미만사업(ESCO투자사업은 10억원 미만)은 에관공 자체 평가 실시

② 정책목적상 우대지원 필요사업 등은 심사시 가점 부여(신설)

○ 전문ESCO, 그린크레딧 참여기업, 녹색인증 기업 등

③ 자금추천위원회 산하에 설비, 성과 2개 분과소위원회 신설

○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 : 지원대상설비의 적격성 정기적 검토

○ 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 : 성과목표 및 지표, 평가기법 개발 등

* 소위원회 구성, 개최 시기 등 세부지침은 에관공에서 별도 규정(지경부 승인)

④ 지원대상설비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몰제* 도입(신설)

○ 기술진보, 보급 일반화 등 지원필요성 감소로 제외하거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신규지정이 필요한 설비 선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설비 적정성 검토

* 대상설비 신규 지정시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시 자동 제외

⑤ 자금지원 대상설비 목록 체제 정비

○ 지원대상 목록을 사업별로 대분류하고 해당부문 설비 항목 정돈

- ESCO 투자사업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, 산업체 등 절약시설설치사업(사업부문, 시설부문),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, 수요관리투자사업

## □ 기타 지원지침의 세부조항 및 용어 정리 등

① 자금지원 대상범위의 착수(계약일) 시점을 전년도 '11월이후'에서 '4사분기'로 1개월 완화

* ESCO, 산업체 등이 대형 사업을 연도말에 착수하는 경우, 관련 의사결정, 서류준비 등의 시간부족, 예산소진 등으로 당해연도에 자금신청 곤란

② 중소기업확인서(양식)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

○ '중소기업기본법'과 '조세특례제한법'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키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단일화